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27일 05시 39분

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

2012.09.14 조회수 333

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의 맛과 멋을 대표할만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코자 하오니 「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」과 「좋은식단이행기준」에 적합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기간 : 2012. 9. 17 ~ 10. 7 (3주간)
2. 신청자격 :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
3. 신청방법 : 직접방문
4. 모범음식점 선정기준
 -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[붙임1]
 - 건물의 구조, 환경 및 화장실(남·여 구분) 청결 업소
 - 주방 위생상태 및 식재료 보관상태
 -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
 - 종업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 등

2012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안내

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의 맛과 멋을 대표할만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코자 하오니 「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」과 「좋은식단이행기준」에 적합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기간 : 2012. 9. 17 ~ 10. 7 (3주간)
2. 신청자격 :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
3. 신청방법 : 직접방문
4. 모범음식점 선정기준
 -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[붙임1]
 - 건물의 구조, 환경 및 화장실(남·여 구분) 청결 업소
 - 주방 위생상태 및 식재료 보관상태
 -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
 - 종업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 등
5. 지정절차



6. 제출서류 :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[붙임2]
7. 모범업소 지원내용
 -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 시군구, 우리시 유관기관, 각종행사시 홍보
 - 모범음식점 지정서 수여 및 표지판 업소 부착
 - 물품지원 :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료 지원등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cats.jpg (1064 hit / 159.7 KB) ↓

미리보기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전글 | 다음글 |
| < 에이즈, 바로알면 두렵지 않습니다! |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> |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

